

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내무위원회

1993. 6. 10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6월 2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6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90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 (1993. 6. 10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홍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고 그 명칭도 『청주고인쇄박물관』으로 하여,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운영키로 하고
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『청주고인쇄박물관』으로 등록을 필하였음 (1992. 12. 21)
-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고인쇄문화수준을 세계에 선양하고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"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"를 "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기관명칭을 변경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임 홍 식)

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보관하고 있는 홍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켜 1992. 12. 21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였으며,

현재 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 기관명칭도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 10명, 찬성 10명)

7. 소수 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